

일본 국내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께

노동 조건 핸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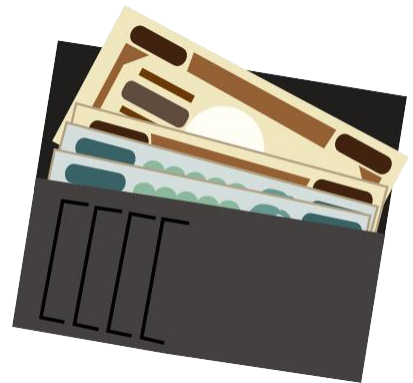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노동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곤란을

일본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또는 통근 시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국적과 상관 없이 일본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노동법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국어로 노동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한 상담기관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일본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곤경에 처한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나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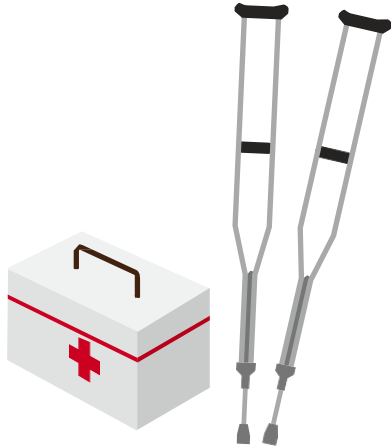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제 생활은 곤란에 처하고 맙니다.



잔업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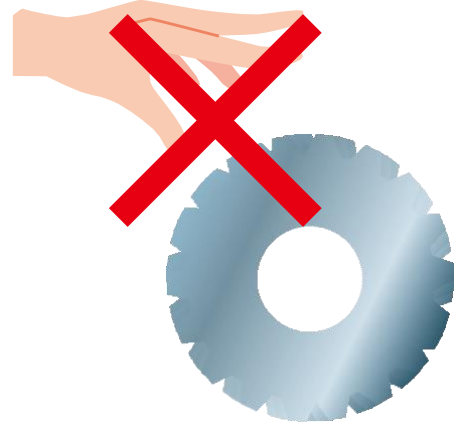
매일 잔업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잔업 수당이 조금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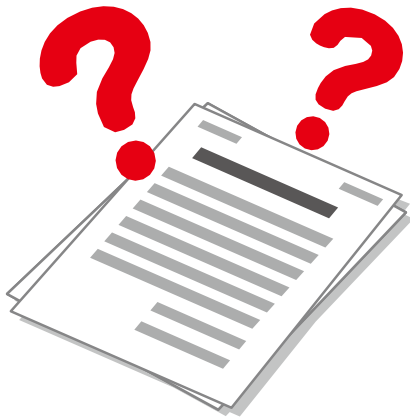
회사가 노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다쳐서 일을 못합니다.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위험한 작업으로 다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장에는 조금만 실수해도 다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노동조건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건에 대해 회사에서 구두로 간단한 설명밖에 듣지 못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니다.

우선 이 핸드북을 통해 당신이 일하는 직장의 노동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합시다.

CONTENTS

■ 사례 연구	P.01
■ 노동기준법	P.03
■ 노동계약법	P.08
■ 최저임금법	P.08
■ 노동안전위생법	P.09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P.10
■ 자주 있는 질문	P.11
■ 상담창구 소개	P.14
■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속표지

1

일본의 노동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췌)

노동기준법

01 균등 대우 (제3조)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차별적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02 강제 노동의 금지 (제5조)

사용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의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03 중간 착취의 금지 (제6조)

그 누구도 법률로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04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계약 (제13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결정한 노동조건이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이 적용됩니다.

05 계약 기간 (제14조)

노동계약은 기간을 정해 체결하는 경우, 최장 3년을 상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①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노동자 및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와 체결하는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최장 5년, ②일정 사업(건설 공사 등)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노동 계약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상한 기간으로 합니다.

06 노동조건명시의 명시 (제15조)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다음의 노동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①노동계약의 기간, ②유기노동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기준 (통산계약기간 또는 유기노동계약 갱신횟수에 상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상한), ③근로 장소 및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 (취업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의 변경 범위를 포함함), ④노동시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각, 시간외 근무의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 ⑤임금(금액, 계산 및 지급 방법, 임금 계산 마감일 및 지급일), ⑥승급에 관한 사항, ⑦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이유를 포함함), ⑧계약 기간내에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18조 제1항의 무기변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유기노동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무기전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무기전환 후의 노동조건

적자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이후 추가가 됩니다.

【규정할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

⑨ 퇴직금의 대상자, 계산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⑩ 상여, 임시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⑪ 노동자가 부담하는 식비, 작업 용품 등의 사항, ⑫ 직장의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⑬ 기타(직업훈련, 재해 보상, 표창 및 제재, 휴직, 여비 지급 등)

사용자는 상기의 ①~⑤와 ⑦에 대해서는, 서면(노동자가 원할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 SNS 등도 가능)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단시간·유기고용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상기 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문서 교부 등을 통해 조속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및 유기고용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 승급 유무, ② 퇴직 수당 유무, ③ 상여 유무, ④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한 상담창구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통지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56460.html>

07 배상 예정의 금지 (제16조)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08 해고 제한 (제19조)

- 1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2 여성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기초하여 산전 6주일(다태 임신인 경우는 14주일) 및 산후 8주일은 휴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해, 이 휴직 기간 중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제한: 다음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그 후 30일간

산전 6주일·산후 8주일의 휴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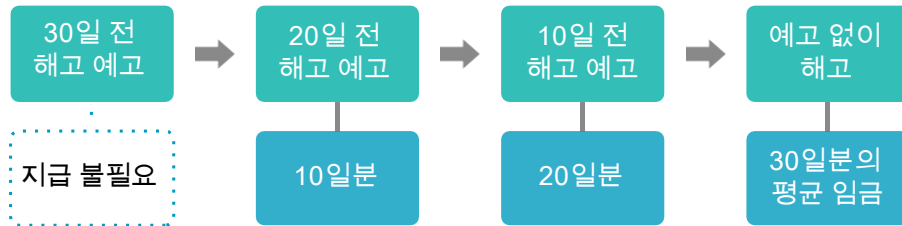
+

그 후 30일간

09 해고의 예고 (제20조)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 합니다. 또한 평균 임금이란, 해고 통고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예고 일수는 1일당 평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면 2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되고, 2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면 1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 퇴직 시 등의 증명 (제22조)

노동자가 퇴직할 때 아래에 기재한 ①~⑤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를 받은 노동자가 해고 이유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①사용 기간, ②업무의 종류, ③그 사업에서의 지위, ④임금, ⑤퇴직 사유(해고의 경우에는 그 이유)

11 금품의 반환 (제23조)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2 임금의 지급 (제24조)

사용자는 임금을 ①화폐로, ②노동자에게 직접, ③전액, ④매월 1회 이상, ⑤일정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13 휴업 수당 (제26조)

사용자는 스스로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를 휴업하게 한 경우, 휴업 수당(평균 임금의 60%)을 지급해야 합니다.

14 노동 시간, 휴식, 휴일의 원칙 (제32조, 제 34조, 제 35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주당 40시간, 일당 8시간 이내로 노동자를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이 1일당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분의 휴식,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의 휴식을, 각각 노동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1일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36협정에 규정된 연장시간 수의 한도와 그 공지의 필요성 (제36조)

- 1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 시간외 휴일 노동에 관한 노사협정(이하, “36협정”)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한 경우, 동 협정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휴일 노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36협정에 규정된 시간 외 노동의 연장시간 수는 월 45시간 및 연 360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대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1년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인 경우에는, 월 42시간 및 연 320시간 이내)
- 3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아래의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간 시간외 노동시간 수는 연 720시간 이내
 - 월간 시간외 노동과 휴일 노동을 합산한 시간 수가 100시간 미만
 - 직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및 6개월간의 시간외 노동과 휴일 노동을 합산한 시간 수의 1개월당 평균 시간은 80시간 이내
 - 시간외 노동이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달은 연 6개월 이내

(※) 3에 대해서는, 건설업, 자동차 운전 업무 등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일부 예외 있음)되며, 신상품 등의 연구개발 업무는 적용제외입니다.
- 4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36협정을 항상 각 작업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자에게 공지할 것이 사용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6 시간외·휴일 노동 및 심야의 할증임금 (제 37조)

사용자가 시간외,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휴일에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킨 경우에는, 아래의 할증률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외 노동 할증임금 25% 이상의 비율
- 심야 노동 할증임금 25% 이상의 비율
- 휴일 노동 할증임금 35% 이상의 비율

또한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은, 법정 할증임금률이 50%입니다.

17 연차유급휴가 (제39조, 제136조)

- 1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총 노동일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해 아래의 연차유급휴가 (이하 “연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일반 노동자(주간 소정의 노동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노동자)

계속 근무 연수	0.5	1.5	2.5	3.5	4.5	5.5	6.5 이상
부여 일수	1 0	1 1	1 2	1 4	1 6	1 8	2 0

● 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노동자

주간 소정 노동일수	연간 소정 노동일수	계속 근무 연수						
		0.5	1.5	2.5	3.5	4.5	5.5	6.5 이상
4 일	169 ~ 216 일	7	8	9	1 0	1 2	1 3	1 5
3 일	121 ~ 168 일	5	6	6	8	9	1 0	1 1
2 일	73 ~ 120 일	3	4	4	5	6	6	7
1 일	48 ~ 72 일	1	2	2	2	3	3	3

- 2 노동자가 시기를 지정한 날에 연휴를 취득하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노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부여된 연휴 중 5일을 초과하는 일수분에 대해 계획 연휴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5일의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연휴를 설정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3 사용자에게 대하여, 1년에 10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5일의 연휴 부여 의무가 부과됩니다.
- 4 연휴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사용자는 연휴를 취득한 노동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8 취업 규칙과 제재 규정의 제한 (제89조, 제91조)

노동자를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노동시간, 임금,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반드시 항상 각 작업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자에게 공지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징계 처분의 하나로 감봉 제재 규정을 두는 경우, 감봉은 1회의 액수가 평균 임금의 1일분 중 절반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노동계약법

01 기간 규정이 없는 노동계약에서의 해고 (제16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권리 남용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됩니다.

02 유기노동계약에서의 해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 규정이 있는 노동계약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계약 기간 중에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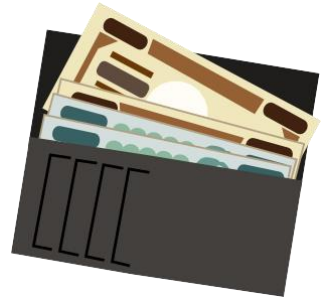
03 무기노동계약으로의 전환 (제18조)

유기노동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통산 5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노동자가 신청하면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04 유기노동계약 노동자의 고용 정지 (제19조)

유기노동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해고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해당 유기노동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계약 갱신 신청을 사용자가 거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종전과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계약 신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최저임금법



01 최저임금의 종류 (제9조, 제15조)

최저임금에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 지역별 최저임금** 도도부현마다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산업과 직종을 불문하고 각 도도부현 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 2 특정 최저임금** 특정 산업에 대해 규정되는 최저임금.(모든 산업에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02 최저임금의 효력 (제4조, 제6조)

- 1**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액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동일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이 둘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액수가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4** 파견 노동자에게는 파견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4 노동안전위생법

01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 조치

사업자는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적절한 작업 방법의 지시 등, 법령으로 규정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개구부에 덮개, 울타리 등의 설치, 프레스, 목공 기계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 유해물의 적절한 관리 등

02 안전위생교육 (제59조)

사업자는 노동자를 고용 또는 배치 전환할 경우, 필요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법령으로 규정된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03 취업 제한 (제61조)

사업자는 위험물 및 유해물 취급 등, 법령으로 규정된 작업에 유자격 노동자 이외를 종사시키면 안됩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업무>

- 크레인(인양 하중이 5톤 이상인 것) 운전
- 지게차 등 하역 운반 기계(최대 하중이 1톤 이상인 것) 운전
- 이동식 크레인(인양 하중이 1톤 이상인 것) 운전
- 가스 용접
- 기중기 업무 (인양 하중 1톤 이상의 크레인 등에 관한 것)
- 차량계열의 건설기계(기체 중량이 3톤 이상인 것) 운전 등

04 건강검진 (제66조)

사업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및 법정 기간마다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시 및 정기적(1년 이내에 1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심야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배치 변경 시 및 6개월 이내마다 1회 실시
- 특수 건강검진...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시, 배치 변경 시 및 일정 기간마다 특별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석면 업무 등에 종사시킨 적이 있는 노동자로서, 현재 사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실시

05 면접 지도 (제66조의8)

사업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과중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06 스트레스 체크 (제66조의10)

사업자는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정기적(1년 이내에 1회)으로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고스트레스로 평가된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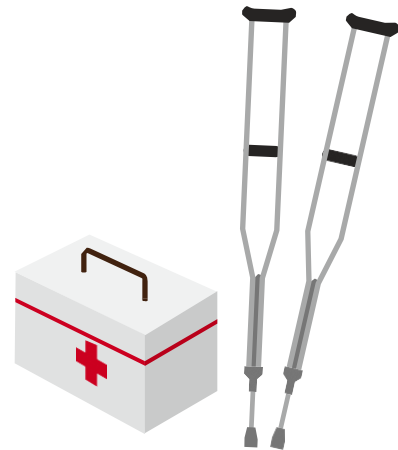
07 노동자의 의무 (제26조의)

노동자는 사업주가 강구한 이들 조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 등에 이른 경우, 노재보험제도(한국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를 제공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급부 또는 요양 비용을 지급	▶ 요양(보상) 등 급부
요양을 위해 노동이 불가능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4일째부터 급부기초일액의 80%를 지급(휴가 특별 지급금을 포함)	▶ 휴업(보상) 등 급부
상병 등이 치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 장애(보상) 등 급부
사망한 경우, 유족 수 등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 유족(보상) 등 급부 등



6 자주 있는 질문

Q.1 노동계약은 반드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나요? 또, 기간 만료 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계약은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규정이 없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 하에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간노동계약이 갱신되어 통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신청하면 기간 규정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05), [2](#) (03) 참조

Q.2 3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 벌금 50만 엔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정말 벌금을 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는 노동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규정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1](#) (07) 참조

Q.3 직장에서 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위해 휴업 중인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고가 허용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08) 참조

Q.4 노동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기간과 산전 산후 휴업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간 이외에도 노동자의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법률 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① 국적, 신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해고
- ② 노동자가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한 것, 도도부현 노동국에 개별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청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 ③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 ④여성이라는 것, 혹은 여성이 혼인, 임신, 출산한 것, 산전 산후의 휴업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 ⑤육아휴업 및 개호휴업을 신청한 것, 또는 육아휴업 및 개호휴업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

▶ 1 (08) 참조

Q.5 퇴직할 때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노동자가 퇴직할 때, 소정의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7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 (11) 참조

Q.6 일이 없어서 공장을 일주일 쉬기로 하였는데, 임금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의 약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13) 참조

Q.7 평소에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바쁠 때는 하루 13시간 이상, 가끔 밤 10 시 넘어서까지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간당 시급 1200엔에 일한 시간을 곱한 월급밖에 지급되지 않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ANSWER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평상시 임금의 125%, 질문자의 경우, 시간당 1500엔 이상의 액수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밤 10 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시간대에 일한 경우에는 심야 할증임금이 적용되어 평상시 임금의 25% 를 지불해야 하므로, 시간 외 노동과 합하면 150%, 즉 질문자의 경우, 시간당 1800엔 이상의 액수를 지급할 것이 회사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1 (16) 참조

Q.8 3일 연속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으려고 회사에 신청했더니, 회사로부터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연차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건가요?

ANSWER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지정한 구체적인 일자가 연차 부여일이 되며, 연휴를 나누어 취득할지 또는 며칠간 이어서 취득할지도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과의 조정을 위해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시기 변경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1 (17) 참조

Q.9 선배 직원이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해도 되나요?

ANSWER 사업자는 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을 시킬 경우, 최대 적재하중 1톤 미만의 지게차일 때는 특별 교육을 수료한 자를 사용하고, 최대 적재하중 1톤 이상의 지게차일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기능 강습을 수료한 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4 (03) 참조

Q.10 근무 중에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치료비는 받고 있지만, 쉬는 동안의 임금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ANSWER 노재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노재보험에서는 업무상 또는 통근 도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업 4일째부터 휴업 (보상) 등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5 참조

7 상담창구 소개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 안내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을 개설하여, 다음의 13개국어로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에서는,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설명과 관련기관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을 통한 상담에는, 고정전화의 경우 180초마다

8.5엔(세금 포함), 휴대전화의 경우 180초마다 10엔(세금 포함)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언어	개설 요일	개설 시간	전화번호
영 어	달~금	오전 10시~오후 3시 (정오~오후 1시는 제외)	0570-001-701
중국어			0570-001-702
포르투갈어			0570-001-703
스페인어			0570-001-704
타갈로그어			0570-001-705
베트남어			0570-001-706
미얀마어	달		0570-001-707
네팔어	달 ~ 목		0570-001-708
한국어	목, 금		0570-001-709
태국어	수		0570-001-712
인도네시아어			0570-001-715
캄보디아어 (크메르어)			0570-001-716
몽골어	금		0570-001-718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 안내

고정전화, 휴대전화, 공중전화, 어느 쪽을 통해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은, 후생노동성이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프리 다이얼입니다. 고정전화 휴대전화 공중 전화, 어느쪽을 통해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통한 상담은, 다음의 14개국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영업시간 외 및 휴일에,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설명 및 관련기관 소개 등을 실시합니다.

언어	개설 요일	개설 시간	전화번호
일본어	달~일 (매일)	○평일(월~금) 오후 5시~오후 10시 ○토, 일, 경축일 오전 9시~오후 9시	0120-811-610
영 어			0120-531-401
중국어			0120-531-402
포르투갈어	달~토		0120-531-403
스페인어	목, 금, 토		0120-531-404
타갈로그어	화, 수, 토		0120-531-405
베트남어	화, 수, 금~일		0120-531-406
미얀마어	수, 일		0120-531-407
네팔어			0120-531-408
한국어	목, 일		0120-613-801
태국어			0120-613-802
인도네시아어			0120-613-803
캄보디아어 (크메르어)	달, 토		0120-613-804
몽골어			0120-613-805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설치장소 안내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는 아래의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설치되어, 외국어로 노동조건 관련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설일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내 포털 사이트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도부현	설치장소	대응 언어													소제지	연락처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네팔어	한국어	태국어	힌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홋카이도	감독과						○								삿포로시 기타구 기타 8초니시 2-1-1 삿포로제1합동청사	011-790-8784
	하코다테시		○												하코다테시 산카와초 25-18 하코다테지방합동청사 1층	0138-87-7605
	구시로시	○				○									구시로시 카시와기초 2 12	0154-42-9716
	국찬지시	○													아부타고 국찬조미나미 1초카키시 3초메 1번지 국찬지방합동청사 4층	0136-22-2374
아키타현	오다테경찰서						○								오다테시3노환 6-2	0186-42-4033
미야기현	감독과		○				○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뎡포마치 1 센다이제4합동청사	022-299-8838
이바라키현	감독과	○	○	○											미토시 미야마치 1-8-3 이바라키노동종합청사	029-224-6214
도치기현	감독과	○		○	○										우즈노미야시 아케보초 1-4 우즈노미야제2지방합동청사	028-634-9115
	도치기시		○												도치기시 누마와초 20-24	0282-24-7766
군마현	감독과						○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2-3-1 마에바시지방합동청사 8층	027-896-4735
	오타시			○	○										오타시 이즈카초 104 - 1	0276-45-9920
사이타마현	감독과	○														048-816-3596
			○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토신 11-2 캄트엑시스타워 15층	048-816-3597
							○									048-816-3598
지바현	감독과	○													지바시 주오구 주오 4-11-1 지바제2지방합동청사	043-221-2304
	후나바시시		○												후나바시시 카이진초 2-3-13	047-431-0182
	가시와시		○				○								가시와시 가시와 255-31	04-7163-0246
도쿄도	외국인특별상담사무소	○	○			○	○		○				○	○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타워 13층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프레스크)내	03-5361-8728
	신주쿠시	○	○					○		○	○	○			신주쿠구 하쿠닌초 4-4-1 신주쿠노동종합청사 4층	03-5338-5582
	시나가와시		○			○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3-13-26	03-3440-7556
가나가와현	감독과	○		○	○	○	○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제2합동청사	045-211-7351
	아츠기시			○											아쓰기시 나카초 3-2-6 아쓰기T빌딩 5층	046-401-1641
니가타현	감독과						○								니가타시 주오구 미사키마치 1-2-1 니가타미사키합동청사 2호관 3층	025-288-3503
도야마현	감독과		○												도야마시 진즈혼마치 1-5-5 도야마노동종합청사	076-441-4104
	다카오카시			○	○										다카오카시 나가와혼초 10-21 다카오카법무합동청사	0766-23-3130
이시카와현	감독과		○				○								가나자와시 사이넨 3-4-1 가나자와에키니시합동청사 5층	076-200-9771
후쿠이현	감독과		○	○	○										후쿠이시 하루이마 1-1-54 후쿠이하루이마합동청사 9층	0776-22-2652
야마나시현	고후시			○	○										고후시 시모이다 2-5-51	055-224-5620
나가노현	감독과				○										나가노시 나가코쇼 1-22-1	026-223-0553
기후현	감독과			○	○										기후현 기후시 긴류초 5-13 기후합동청사 3층	058-245-8102
	기후시		○												기후현 기후시 고츠보 1-9-1 기후노동종합청사 3층	058-247-2368
	다지마시					○									기후현 다지마시 오토와초 5-39-1 다지마중합동청사 3층	0572-22-6381
시즈오카현	감독과	○	○	○	○		○								시즈오카시 야오이구 오테마치 9-50 시즈오카지방합동청사	054-254-6352
	하마마쓰시				○										하마마쓰시 나카구 주오 1-12-4 하마마쓰합동청사	053-456-8148
	미시마시	○													미시마시 분쿄초 1-3-112 미시마노동종합청사	055-986-9100
	이와타시				○										이와타시 미쓰케 3599-6 이와타지방합동청사	0538-32-2205
	시마다시			○	○										시마다시 혼도리 1-4677-4 시마다노동종합청사	0547-37-3148
아이치현	감독과	○			○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5-1 나고야합동청사 제2호관	052-972-0253
	나고야니시						○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후타쓰바시초 3-37	052-481-9533
	도요하시시				○										도요하시시 다이코쿠초 111 도요하시지방합동청사 6층	0532-54-1192
	가리야시				○										가리야시 와카마쓰초 1-46-1 가리야합동청사 3층	0566-21-4885
미에현	감독과	○													쓰시 시마사키초 327-2 쓰제2지방합동청사 4층	059-226-2106
	욫카이치시			○	○										욫카이치시 신쇼 2-5-23	059-342-0340
	쓰시			○	○										쓰시 시마사키초 327-2 쓰제2지방합동청사 1층	059-227-1282
시가현	오쓰시				○										오쓰시 우치데하마 14-15 시가노동종합청사 3층	077-522-6616
	히코네시			○	○										히코네시 니시이마초 58-3 히코네지방합동청사 3층	0749-22-0654
	히가시오미시			○	○										히가시오미시 욫카이치 미도리마치 8-14	0748-22-0394
교토현	감독과	○					○								교토시 나카구 료가에마치도리 오이케야가루 킨부키초 451	075-241-3214
오사카현	감독과	○	○		○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67 오사카합동청사 제2호관 9층	06-6949-6490
	오사카추오시	○													오사카시 주오구 모리노미야초 1-15-10 오사카추오노동종합청사 5층	06-7669-8726
	덴마시	○													오사카시 기타구 덴마바시 1-8-30 OAP타워 7층	06-7713-2003
	사카이시	○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가와라마치 2-29 사카이지방합동청사 3층	072-340-3829
효고현	감독과		○												고베시 주오구 히가시카와사키초 1-1-3 고베크리스탈타워	078-371-5310
	히메지시						○								히메지시 호초 1-83	079-224-8181
돗토리현	감독과	○					○								돗토리시 토미야스 2-89-9	0857-29-1703
시마네현	감독과		○												마쓰에시 무코지마초 134-10 마쓰에지방합동청사 5층	0852-31-1156
오카야마현	감독과	○	○				○								오카야마시 기타구 시모이시 1-4-1 오카야마제2합동청사	086-201-1651
히로시마현	감독과		○	○	○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하츠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2호관 5층	082-221-9242
	히로시마추오시					○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하츠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2호관 1층	082-221-2460
	후쿠야마시		○				○								후쿠야마시 야사히마치 1-7	084-923-0005
도쿠시마현	감독과		○												도쿠시마시 도쿠시마초 쇼나이 6-6 도쿠시마지방합동청사	088-652-9163
에히메현	감독과		○												마쓰야마시 와카부사초 4-3 마쓰야마와카부사합동청사 5층	089-913-6244
							○									089-913-5653
	이마바리시						○								이마바리시 야사이마치 1-3-1	0898-25-3760
후쿠오카현	감독과	○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히가시 2-11-1 후쿠오카합동청사 신관 4층	092-411-4862
	후쿠오카추오시		○												후쿠오카시 주오구 나가하마 2-1-1 후쿠오카추오노동기준감독서 4층	092-761-5607
	기타큐슈니시시					○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키시노우라 1-5-10 야하타노동종합청사 3층	093-622-6550
나가사키현	감독과						○								나가사키시 만자이마치 7-1 TBM나가사키빌딩 6층	095-895-5105
구마모토현	감독과		○												구마모토시 니시구 가스가 2-10-1 구마모토지방합동청사 A동 9층	096-355-8449
	야쓰시로시		○												야쓰시로시 오테마치 2-3-11	0965-34-6796
가고시마현	감독과						○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3-21 가고시마중합청사	099-216-6100
오키나와현	감독과	○													나하시 오모로마치 2-1-1 나하제2지방합동청사 3층	098-868-1634

※1 2023년10월 1일 현재 기준 데이터로, 주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